

##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3.06.14

3. 정정사유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제81조, 제93조, 제233조)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3.01.01 시행)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3.02.20 시행)

4. 효력발생일 : 2023.07.26

###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43 조(투자신탁의 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 개정반영 (2022.08.30)	<p>①-----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lt;생략&gt;</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 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①-----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lt;이하동일&gt;</p> <p>3.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4.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 <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	<p>(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lt;추가&gt;</p>	<p>(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10.3%로서 위험등급 6 등급 중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펀드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일반사모펀드의 특성 및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투자 대상자산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6등급 중 1등급을 유지합니다.</p>
투자비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주석추가	-  <추가>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주3)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02.20 시행)	<신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 이 때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10.3%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펀드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일반사모펀드의 특성 및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투자 대상자산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6등급 중 1등급을 유지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2023.01.01 시행)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P, C-Pe, S-P 가입자에 한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P, C-Pe, S-P 가입자에 한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 <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td> </tr> <tr> <td>수령요건</td> <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 </tr> <tr> <td>세액공제</td> <td>[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 <td>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td> </tr> <tr> <td>수령요건</td> <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 </tr> <tr> <td>세액공제</td> <td>[납입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																		

		<p>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p> <p>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60%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	없음	해지가산세	없음

		세		<p>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li> <li>-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li> <li>-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li> <li>-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li> <li>-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li> <li>-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li> </ul>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p>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p>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p>※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a href="https://100lifeplan.fss.or.kr">https://100lifeplan.fss.or.kr</a>)의 '연금세제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문구 보완	주 4) --또한,----- <u>초과일부터 3 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u>	주 4)---또한,--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02.20 시행)	주 5) <신설>	주 5)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증권대차거래의 목적 기재	주 6) <신설>	(나)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6)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 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 행할 수 있음
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문구 보완	주 1) 아래--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주 1) 아래--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3) 편입한 집합투 자증권에 관한 사 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업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02.20 시행)	-  <신설>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 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내역 없음)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 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내역 없음)  <주식의 매매회전율> <표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표 2>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및 연평균수익률 주석추가	-  <추가>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주3)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 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 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 지 아니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 개정반영 및 문구 보완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 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 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 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 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22.08.30 시행)	●<추가>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 조 개정반영  (2022.08.30 시행)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표1>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주,%)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1.96

(주1)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

<표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수량	거래비용	수량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거래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합 계	-	-	-	-	-	-

(주1)거래비용은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생략 가능합니다.